

---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협약서**

---



2014.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식회사 이에이텍**

#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서대문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이에이텍(이하 “을”이라 한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소유권·재위탁 등)** ①위탁대상 건물 및 비품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건물 및 비품 등에 관한 관리·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②“을”은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단, 협약기간 중 시설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가동을 일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③②항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및 협잡물(잔재물)의 처리는 재 위탁 또는 대체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내용)** “갑”이 “을”에게 위탁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의무
2. “갑”이 반입하거나 “갑”의 동의를 얻어 반입되는 타 자치단체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부터 자원화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의 처리완료 과정까지 제반 업무

**제5조(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①“을”은 “갑”이 반입하거나 “갑”이 반입처리를 동의한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양질의 부산물(비료원료)을 생산하기 위하여 처리방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생산되는 부산물은 “을”의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연1회 이상 부산물 품질시험 성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명절, 연휴, 김장철과 같이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될 경우에도 정상적인 반입·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갑”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물질의 혼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및 분리수거에 노력한다.

④처리과정에서 선별되는 협잡물(잔재물)은 “갑”이 회수하여 처리한다. 단, 제3조제3항에 의거, “을”이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대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을” 또는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잡물 처리비는 “을”이 부담하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잡물 처리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여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폐수처리설비, 악취방지설비 등의 처리설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선진화된 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러한 시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이 시설 개선 및 주요 처리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개선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을”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⑥“을”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서울특별시 난지 물재생센터에 지속적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을”은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의 시설관련 요구사항 및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갑”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협약기간동안 “을”이 서대문구 외의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등)** ①“갑”은 위탁운영시설에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을”에게 지급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폐협잡물 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량 기준 1톤당 금칠만칠천오백원(W77,500)을 기준단가로 한다.
2. “을”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주민복지지원금, 유지보수비, 부지사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안전관리비, 계근대 등의 정기검사비등 “갑”이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를 부담하고, 위탁운영비 지급 청구서에 세부 반입처리내역서와 제경비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붙여 매월 초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매월 침출수 처리비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며, “갑”은 제2호의 위탁운영비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침출수 처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온라인 지급한다.

②또한, “갑”은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을”에게 지급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을”에게 직접 지급

하게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폐협잡물 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량 기준 1톤당 금칠만칠천오백원(W77,500)을 기준단가로 하며, 타 자치단체와 반입협약에 따라 협약된 금액 중 자치단체 분담금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외부 환경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단가의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해 “을”이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대체 처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제1항제1호의 기준단가 외의 추가 소요비용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재 위탁 또는 대체처리 사유가 “을”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을”이 제6조제7항 후단의 시설인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갑”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2013.11.25일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리모델링 실시협약서('08.7.17)에 명시된 난지 자원화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기간」이 추후 결정될 경우 상호 정산이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위탁운영 시부터 처리 1톤당 일정액을 별도의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에 적립하기로 한다.

1. 적립액은 2012년 기준 전체 감가상각비를 2012년 전체 처리 음식물 톤수로 나눈 금액(W10,500원/톤)으로 한다.

2.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기간」 경과여부에 따라, 이미 위탁운영기간이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갑”에게,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 적립금액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정산하기로 한다.

3. “갑”은 제7조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 1톤당 금칠만칠천오백원(W77,500)에서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 적립금(W10,500원/톤)은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에 직접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타 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제7조제2항의 처리비 1톤당 금칠만칠천오백원(W77,500)에서 W10,500원/톤을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에 적립하고 그 입금증을 제7조제1항2호의 제경비 지급 영수증 사본 등과 함께 매월 초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2014년 1월 1일 이전의 권리의무관계는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기간」 결정에 따라 따로 결정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 위탁운영기간」 협의·결정전이라도 “갑”과 “을”의 합의로 사후정산금(Escrow) 계정계좌에 적립된 금액으로 소요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6.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기간」 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에 추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201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8조(침출수처리비의 납부방법)** ①제7조제1항제1호의 처리비 기준단가에는 “갑”이 난지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하는 침출수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은 매월 “을”에게 지급할 처리비에서 침출수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 공제하여 보관한 후, 서울특별시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정산 결과를 “을”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②난지물재생센터에 침출수를 연계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방법으로 침출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을”이 침출수처리비를 전액 부담한다.

**제9조(시설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①“을”은 고양시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주민지원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매월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을”은 전전월분 주민복지지원금 입금 증빙서류를 매월 초 “갑”에게 제출하는 위탁운영비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

복지지원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에게 사유를 해명하고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은 “을”이 제출한 주민복지지원금 입금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을”이 청구한 전월 분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복지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본 협약기간 중 타 자치단체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운영시설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타 자치단체 반입물량에 대한 주민복지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을”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고양시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을”은 향후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주민지원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1.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때
2.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여 본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협약목적의 수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의 위탁운영상 문제점 발생으로 1개월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발생은 예외로 한다.
4.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타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였을 경우
5. “을”이 “갑”의 동의 없이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설에 3회 이상 반입·처리하였을 경우

②제1항 각호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전부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갑”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③“을”이 제2항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판단 하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을”에게 지급할 위탁운영비와 협약이행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1조(운영현황 보고)** “을”은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발생량, 부산물 생산·반출량 등의 처리상황을 매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및 처리현황을 “갑”이 지정한 서식으로 매일 또는 매월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협약이행 보증)**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이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해지당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사유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을”은 시설의 일시적인 가동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민간처리업체 2개소 이상과 대체처리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서 사본을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을”이 위탁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②“을”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갑”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이 협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갑”과 “을”이 위탁운영을 재 협약하였을 경우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갑”과 “을”은 리모델링 실시협약서('08.7.17)에 명시된 「적정 위탁운영기간」 이 추후 결정될 경우 위탁운영을 재 협약하기로 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①“갑”과 “을”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처리라는 공익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의 내용과 “갑”과 “을”이 2013년 11월 25일 합의한 합의서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협약서에 따른다.

④본 협약은 “2014다212865 기부물품 취득결정 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에 따라 재 협약 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12. .

협약자 “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 청 장 문 석 진 (인)

협약자 “을” : 주식회사 이에이텍  
대표이사 조 남 춘 (인)